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5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안 제7조제6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안 제7조제6항)

가. 개정안 요지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안 제7조제6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 ⑤ (생략)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u>모집할</u> 수 있다.	⑥ ----- ----- ----- ----- <u>모집·접수할</u>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¹⁾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음.

- 「기부금품법」²⁾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과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에는 접수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은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어³⁾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접수’ 행위가 ‘모집’ 행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3) 「기부금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참고로,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타 법률의 경우 [참고]와 같이 ‘모집’만을 언급한 경우와 ‘모집’과 ‘접수’를 모두 언급한 경우로 입법례가 나뉨.
- 이에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와 관련된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 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관련 유사 입법례

□ ‘모집’ 만 명시한 경우

법률명	조문 내용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철 모금 및 그 밖의 <u>모금을 할 수 있다.</u>
보훈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기부금품의 모집</u> 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u>모집하게 할 수 있다.</u>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u>모집하려는</u>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각 호 생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u>모금을 할 수 있다.</u>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u>모집 및 제공</u>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모집’ 과 ‘접수’ 를 모두 명시한 경우

법률명	조문 내용
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u>기부하거나 받는 경우</u> 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u>모집·접수할 수 있다.</u>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u>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u>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